

FTA REPORT



FTA EXPERTS

FTA 단순 조립 판정 방법

김대훈 | 경기지역 FTA 통상진흥센터 관세사

미국 등의 해외투자에 대한 안보통제 도입 및 시사점

고준성 |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FTA 단순 조립 판정 방법



김대훈
경기지역 FTA 통상진흥센터
관세사



1 개요

우리나라는 59개국과 21건의 FTA 협정을 체결하여 발효하였으며, 남미국가, 중앙아시아 국가 등과 계속하여 FTA 협상 중에 있다.

FTA협정은 협정별로 상이한 규정으로 체결되기 때문에 FTA를 적용하기 위해 각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 결정기준 검토가 필요하다.

그중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은 불인정공정 해당 여부이다. FTA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FTA 당사국 내에서 최종 제조·생산된 물품인지 여부이다.

하지만, 이러한 최종 제조·생산이 인정되지 않는 공정에 해당되면, 개별 요건이 충족 되더라도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불인정공정은 단순공정, 최소공정 등으로 표현되며, FTA 협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사국에서 충분가공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충분가공원칙은 역외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인 경우에도 실질적인 변형을 일으킬 정도의 가공이 이루어진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다.

해외 생산기지 활용, 원재료 공급망의 다각화 등으로 현대의 생산 공정에서, 우리나라 원산지 재료로 우리나라에서만 모든 공정이 수행되는 것은 매우 힘들 것이다. 이러한 현대 생산 공정의 현실을 반영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어느 정도의 가공을 충분 가공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FTA 협정에서는 '불인정공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PSR)의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이 충족되더라도 '불인정공정'에 해당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검토하기 위해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뿐만 아니라 해당 상품(제품)이 FTA 협정에서 정한 '불인정공정'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 불인정공정: 단순 조립

FTA 협정 불인정공정에는 이견 없이 명확하게 규정된 공정과, 해석에 따라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공정이 규정되어 있다.

‘동물의 도축’, ‘포장의 변경’, ‘병·캔 등에 단순히 담는 공정’, ‘라벨 부착’ 등의 규정은 누구나 이견 없이 규정된 그대로 해석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단순한 가공’, ‘단순 조립’ 등의 경우 상품(제품) 제공공정을 확인하여 그러한 공정이 ‘실질적 변형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공정’인지 수출자(제조사)의 판단에 따라 원산지상품 인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제품 생산에 필수 공정인 조립공정에 있어서 어디까지 단순한 조립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생산자가 원산지 판정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제품생산에 조립공정이 있는 경우 제조공정도에 조립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여러 단계의 조립이 이루어지는 경우 각 조립 공정별 설명 등 자세한 설명과 작성이 필요하게 된다. FTA 협정별 단순 조립에 대한 규정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 FTA 협정별 불인정공정(조립) 규정 발취

| 협정명 | 규정 내용 |
|--------|--|
| 한-칠레 | (제4.13조 불인정공정) 사. 상품의 단순조립, 세트구성 |
| 한-싱가포르 | (제4.16조 불인정공정) 자. 완전한 제품을 구성하기 위한 단순 조립 |
| 한-EFTA | (제6조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공정) 하.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품의 단순한 조립 |
| 한-아세안 | (제8조 불인정공정) 파.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품의 단순한 조합 |
| 한-인도 | (제3.6조 불인정공정) 러.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기 위한 그 부품의 단순한 조립 |
| 한-EU | (제6조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공정) 하.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품의 단순한 조립 |
| 한-페루 | (제3.5조 불인정공정) 자.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품의 단순한 조립 |
| 한-미국 | 규정 없음 |
| 한-튀르키예 | (제6조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공정) 하.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는 부품의 단순한 조립 |
| 한-호주 | (제3.12조 불인정공정) 아. 어떠한 물리적 변화도 없는 상품의 단순한 재분류 |
| 한-캐나다 | 규정 없음 |
| 한-중국 | (제3.7조 최소공정 또는 가공) 나.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 부품의 단순한 조립 |
| 한-뉴질랜드 | (제3.14조 불인정 공정 및 절차) 사.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기 위하여 물품의 부품을 단순히 조립 |
| 한-베트남 | (제3.7조 최소공정 또는 가공) 하.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는 부품의 단순한 조립 |

| 협정명 | 규정 내용 |
|---------|--|
| 한-콜롬비아 | (제3.14조 불인정 공정) 차. 완전한 상품을 구성하는 부품의 단순한 조립 |
| 한-중미 | (제3.5조 불인정공정) 차.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 부품의 단순한 조립 |
| 한-영국 | (제6조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하.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는 부품의 단순한 조립 |
| RCEP | (제3.6조 최소 공정 및 가공) 단순 조립 규정 없음 |
| 한-이스라엘 | (제3.6조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거.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 부품의 단순한 조립 |
| 한-캄보디아 | (제3.7조 불인정 공정) 하.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 부품의 단순 조립 |
| 한-인도네시아 | (제3.7조 불인정 공정) 하.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 부품의 단순 조립 |



3 불인정공정 판단

FTA 협정에 따라 '단순한' 단어 의미를 규정한 협정도 있고 그렇지 않은 협정도 있다. 불인정 공정을 규정하지 않은 일부 협정을 제외하고 '단순한' 의미를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한-인도 CEPA 협정에서는 단순한 조립을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특별한 기술·기계·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 가공공정을 거치지 않은 원재료를 단순히 조립만 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뜻한다.

우리나라에서 실질적 가공공정을 거친 원재료를 매입하여 수출물품을 조립하는 경우 최종수출자(생산자)의 행위는 단순조립이라고 하더라도 원재료 가공공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인정공정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부품들이 조립이 되며, 이러한 부품들은 우리나라에서 특정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게 된다.

원산지 판정 시 마지막 수출자(제조자)가 행하는 공정만을 판단하게 되면, 단순한 조립으로 판단하여 비원산지 제품으로 판정될 수 있다.

FTA 원산지 입증책임자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제품 생산 전반적인 공정을 입증할 수 있도록 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공정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원산지(포괄)확인서, 제13조 국내제조(포괄)확인서 또는 제조공정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단순조립에 대한 해석은 객관적이고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 그 한계가 발생한다. 대부분의 공산품에는 조립공정이 포함되며, 조립공정의 작업 범위란 다양하기 때문이다.

FTA 협정문, 국내법 등에 단순조립에 대한 명확한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해석에 대한 지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산지 입증 책임자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원산지 판정 어려움을 완화시키고 원산지 사후검증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원산지 검증 주체인 관세당국에서 명확한 지침 또는 참고 자료를 제공할 필요성이 높아진다.

예컨대, FTA 협정에서 규정한 단순조립으로 원산지 제품으로 불인정된 사례 공유, 제품의 큰 범주로 유형화 시켜 충분가공 범위를 예시화 하는 내용 등 원산지 입증 책임자로 하여금 법적 안정성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FTA 원산지 판정은 원산지 결정기준, 품목분류, 불인정공정 판정 등 전문적인 검토를 필요로 한다. 무엇보다 기업에서 FTA 내용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원산지 판정 오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정부에서 시행하는 여러 정부 사업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기지역 FTA 통상진흥센터에서는 FTA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FTA 원산지 증명서, 인증수출자 컨설팅, FTA 교육을 포함하여 FTA 관련된 모든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에 본점 또는 공장을 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사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FTA 법령 및 협정 정보 안내, 해외 관세율 조회 및 FTA 관세 실익 분석, HS CODE 검토, FTA 원산지 입증서류 작성 지원 등 종합적인 밀착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FTA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경기지역 FTA 통상진흥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컨설팅 접수를 하거나 아래 QR코드를 통해 간편 신청도 가능하다.

홈페이지: ggfta.or.kr



FTA 1:1 기업방문 컨설팅



FTA전문컨설팅 신청

FTA 전문컨설팅 신청

FTA 1:1 기업방문 설명회



기업방문FTA설명회

기업방문 FTA 설명회

미국 등의 해외투자자에 대한 안보통제 도입 및 시사점



고준성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1 미국의 최근 해외투자 안보통제 도입 배경

2023년 8월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우려 국가'로서 중국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i) 반도체 및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ii) 양자 정보 기술 그리고 (iii) 인공 지능 시스템 등 3개 부문에 대한 특정 유형의 미국(인)의 해외투자(outbound investment)를 규제하는 행정 명령(Executive Order: 'EO')을 공표했다.

이보다 조금 앞선 2023년 7월 25일, 미 상원은 민주당 케이시 상원의원과 공화당 코닌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 수정안”¹을 91대 6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수정안은 “2023 해외투자 투명성법”(Outbound Investment Transparency Act of 2023: ‘OITA’)²으로 칭하는데, 8월의 행정 명령에 비해

1 Amends Bill: S.2226 —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4, <https://www.congress.gov/amendment/118th-congress/senate-amendment/931/text>.

2 참고로 OITA는 이전에 상원에서 발의된 “2022 국가핵심역량방어법(National Critical Capabilities Defense Act of 2022: ‘2022 NCCDA’ 또는 ‘개정 NCCDA’)” 법안에 비해 해외투자 통제의 범위를 축소하고, 통제 수준 역시 완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보다 많은 우려 국가를 포함하고, 초음속 항공기 및 위성 기반 통신 등 투자 통제 대상 분야도 넓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미국 행정부 및 의회가 안보를 이유로 해외투자를 통제하는 입법 조치를 도입하는 배경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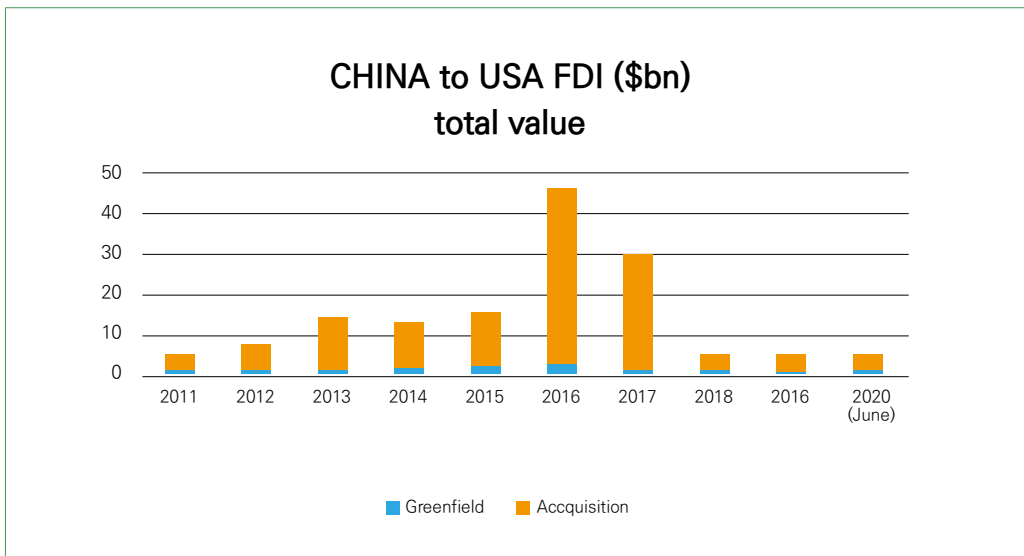
먼저 중국은 2010년대 들어 미국 등 선진국 기업의 첨단기술을 획득할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FDI)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중국이 합법적인 FDI를 통해 미국의

핵심기술 기업에 접근하자, 미국은 중국계 자본에 의한 미국 기업의 인수를 통해 전략 분야의 미국 기술이 해외로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8 외국인투자위험심사 현대화법(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 ‘FIRRMA’)”을 제정하여 미국에의 외국인직접투자(inbound FDI)에 대한 안보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강화하였다.

그 결과 중국의 對美 FDI는 2018년 이후 급락하였고, M&A형 투자는 사실상 단절되기에 이르렀다(<그림 1>).

〈그림 1〉 미국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 심사 강화 전후 중국의 對美 FDI 유형별 추이 (2011-2020년 6월간)



이에 비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투자자들은 중국에 약 1,500억 달러를 투자하였다(<그림 2>).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투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최근 몇 년 동안 양국 간 지정학적 긴장과 코로나19 팬데믹이 이러한 미국의 대중 투자 흐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는 하였으나 미국의 對中 해외직접투자(outbound FDI)가 급감하지는 아니하였다.

특히, 2010년 이후 중국에서 미국의 FDI가 가장 많이 유입된 산업은 약 250억 달러에 달하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로서 미중 간 경쟁의 중심에 있는 반도체 및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가 많았다.

또한 첨단기술에 접근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국 스타트업은 2010년 이후 미국 투자자들로부터 500억 달러 이상의 벤처 투자를 받았다.

더욱이 중국으로부터의 대미 투자에 대한 안보 심사가 강화된 2018년 이후인 2019년에도 미국 다국적기업들은 중국에 약 42억 달러의 R&D 비용을 투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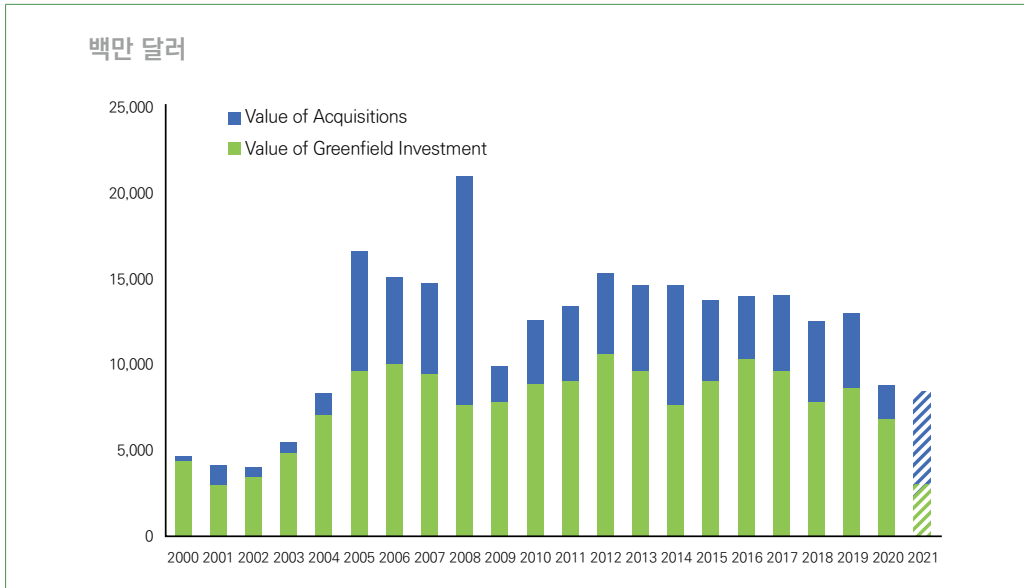
이러한 미국의 對中 해외직접투자, 특히 미국 기술기업의 對中 직접투자는 민감 기술 및 노하우의 중국으로의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중국의 민간 및 군사 역량을 강화하여 결과적으로 미국의 안보에 위협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워싱턴 특히 미 의회 내에서 강하게 제기되었다.

OITA를 발의한 케이시 상원의원은 "OITA는 미국의 국가 안보 기술과 노하우가 적국의 손에 들어가게 될 위험에 대해 미국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첫 걸음이다"고 말했다.

동법의 또 다른 발의자인 코닌 상원의원은 "미국 기업이 중국과 러시아 같은 국가에 반도체나 AI와 같은 기술에 투자할 때 그들의 자본, 지적 재산, 혁신이 잘못된 손에 들어가 미국에 대한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며 "이 법안은 이러한 투자에 대한 감시를 제고함으로써 미국의 국가 안보 취약성을 보다 잘 평가하여 적의 위협에 맞서며 글로벌 무대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³

3 Outbound Investment Transparency Act gives the United States'visibility into investments in national security sectors made in countries of concern, including People's Republic of China, <https://www.casey.senate.gov/news/releases/casey-cornyn-bill-to-screen-us-investment-in-china-overwhelmingly-passes-senate-2023..>

〈그림 2〉 미국의 대중 FDI 유형별 거래 규모 추이(2000-2021년간)



출처: Rhodium Group. 2021년은 잠정 수치

2 미국 해외투자투명성법(OITA)안의 주요 내용⁴

가. 입법 취지

미국은 특별히 중국을 비롯한 우려되는 해외 국가들에 대한 직접 투자로 인해 미국의 제조업 혁신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고, 코로나 19는 중국의 핵심 공급망 통제와 미국의 국가 및 경제 안보(U.S. national and economic security)에 대한 취약성과 위험을 경험하였다.

더욱이 미국 기업들은 중국에의 투자를 통해 단순히 제조를 넘어 자신들의 자본, 지적 재산 및 혁신을 중국에 전달하고 이를 통해 이중용도 핵심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에 우려를 갖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의 대중 수출 및 투자에 대한 안보 통제에서는 그러한 미국 기업의 對中 투자를 감시하고 견제할 장치가 결여되어 있다.

4 이에 관해서는 G.M. Cinelli, etc., CONGRESS OUTLINES SCOPE OF NOTIFICATION PROCESS FOR OUTBOUND INVESTMENT IN NON-US JURISDICTIONS, 2023.8.2.와 U.S. Senators John Cornyn (R-TX) and Bob Casey (D-PA), Outbound Investment Transparency Act of 2023를 참고하였다.

따라서 이것이 미국 핵심 기술 등의 유출을 위한 통로가 될 수 있고, 이러한 구멍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OITA(해외투자투명성법) 입법이 추진되었다.

나. 핵심 장치

OITA(해외투자투명성법)안에서는 미국 기업의 적대적인 외국에 대한 투자에 대해 통지(notification)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국가·경제 안보상 취약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OITA안에 따르면 적용 대상 미국 법인은 중국을 포함한 우려 대상 국가의 대상 부문에 대한 특정 투자 활동을 대상 활동의 예상 완료일로부터 14일 전까지 미 재무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즉, 이러한 유형의 해외 투자 통지를 통해 이중 용도를 가지는 미국의 국가 핵심 역량이 적대국에게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미 재무부는 상무부와 협력하여 동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주관하는데, 해당 활동을 금지 또는 완화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활동을 법무장관에게 회부할 수 있는

권한과 재무부에 통지되지 않은 해당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다. 통지 대상 국가 핵심역량 분야 및 투자 활동

통지 대상 국가 핵심역량 분야에는 반도체,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이중용도 배터리, 양자 기술, 인공 지능, 위성 기반 통신, 초음속(hypersonic), 이중용도 네트워크 레이저 스캐닝 시스템 그리고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과 관련이 있다고 간주되는 기타 수출 통제 기술이 포함된다.

대상 투자(활동)에는 하나 이상의 국가 핵심 역량 부문과 관련된 생산, 설계, 테스트, 제조, 제작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의 자회사나 합작회사의 설립 즉, 그러한 그린필드 투자 및 합작투자 그리고 운영협력, 이사회 참여 또는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을 통한 기술 이전 등이 포함된다.



3 미 대통령의 2023년 8월 9일 행정 명령(EO)⁵

가. 개요

2023년 8월 9일, 바이든 대통령은 군사, 정보, 감시 또는 사이버 지원 역량에 핵심적인 민감·첨단 기술 및 제품을 개발하고 악용하려는 우려 국가가 제기하는 미국에 대한 국가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행정명령(EO)을 공포하였다.

그 취지는 차세대 군사 혁신에 핵심적인 기술을 보호함으로써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고 미국의 국가안보를 수호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미 대통령은 재무부, 하야금 상무부를 포함한 다른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새롭고 표적화된 국가안보 프로그램을 담은 규칙(regulations)을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지시하였다.

나. 적용 대상 실체 및 거래

적용 대상 우려국가로서 중화인민공화국(PRC)만 지정하였음이 주목된다. 다음으로 적용 대상 거래에는 무형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거래, 특히 인수합병(M&A),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및 기타 계약을 통한 지분 취득, 그린필드 투자 및 합작 투자 등이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EO에서는 다음의 3개 분야를 특정하고 있는바, (i) 반도체 및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로서 재무부는 전자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또는 반도체 제조장비 개발, 첨단 집적 회로의 설계, 제조 또는 패키징, 슈퍼컴퓨터 설치 또는 판매에 관여하는 중국 법인에 대한 미국 투자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저급 집적회로 (less advanced integrated circuits)의 설계, 제조, 패키징에 관여하는 중국 법인에 대한 미국 투자에 대해서도 통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5 이에 관하여는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Office of Public Affairs Press Release: August 9, 2023, Treasury Public Affairs, Press@Treasury.gov; FACT SHEET: President Biden Issues Executive Order Addressing United States Investments in Certain National Security Technologies and Products in Countries of Concern; Treasury Department Issues Advance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to Enhance Transparency and Clarity and Solicit Comments on Scope of New Program을 참조하였다.

(ii) 양자정보 기술과 관련 양자컴퓨터 및 특정 부품 생산, 특정 양자센서 개발, 양자네트워킹 및 양자통신 시스템 개발에 관여하는 중국 법인에 대한 미국 투자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iii) 특정 인공지능(AI) 시스템과 관련 AI 시스템을 통합하고, 군사 또는 정보 용도를 가질 수 있으며 국가안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최종 용도로 설계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는 중국 법인에 대한 미국 투자에 대해 통지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AI 시스템을 통합하고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최종 용도(예: 군사 감시 최종 용도)를 위해 설계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활동에 관여하는 중국 법인에 대한 미국 투자에 대해서는 이의 금지를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요청 중이다.

4 동맹국에의 동참 추진: EU의 해외투자에 대한 안보 통제 모색⁶

미국 정부는 우려 국가에의 해외투자를 통해 미국 핵심 기술이 유출됨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안보 위협에 대처함에 있어 그 동맹국 및 파트너들에게도 자국과 유사한 해외투자 안보 통제를 시행하도록 노력한다.

이와 관련 미국의 핵심 동맹인 EU는 2021년 출범한 “미국-EU 간 무역기술위원회(Trade and Technology Council: TTC)”라는 협의체를 통해 투자 안보에 대한 대응을 상호 조율하기로 약속하여 논의 중에 있다.

특히, EU는 2023년 6월 경제 안보 전략에서 유럽위원회가 연말까지 특정 해외 투자 통제를 위한 '이니셔티브'를 회원국들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EU 기업의 자본, 전문성 및 지식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훼손할 수 있는 실체들의 군사 및 정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하여 유럽위원회는, 투자가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군사 능력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소수의 민감기술과 관련된 해외 투자에 대해 대상이 특정된 (targeted) 수단을 개발해야 하는지 여부와 그 방법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

6 이에 관하여는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Author: Gisela Grieger, Members'ResearchService PE 751.470 -September 2023, US approach to outbound investment screening을 참조하였다.

5 전망, 시사점 및 대응 과제

가. 전망

OITA(해외투자투명성법)는 하원과의 조정이 남아 있어 그 법안의 채택을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OITA안은 통제 대상 분야가 광범위하여 업계로부터의 강한 반대를 받았던 2022 NCCDA(국가핵심역량방어법)⁷안을 상당히 완화하여 채택 시 큰 수정 없이 채택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에 비해 대통령 EO의 경우 재무부가 규칙을 마련하는 대로 시행된다. 한편, EU에서의 해투안보 통제 조치의 형태 및 수준은 연말까지 진행 중인 검토 결과에 달려 있다.

다만, 대내 투자(inbound investment)에 대한 안보 심사 조치 도입에 대해서는 주요 동맹국들이 안보 차원에서 적극 공조하였던 것과 달리 대외투자에 대한 안보심사 통제의 경우 기업의 글로벌 경영 자율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아 EU 등 동맹국들의 공조가 불투명해 보인다.

나. 시사점

그간 미국이 국가안보에 대한 극히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글로벌 투자 환경을 옹호해 왔고, 투자에 대한 안보 통제도 對內 투자에 국한되어 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번 미국의 OITANA EO에 따른 재무부 규칙의 도입은 전통적인 투자정책으로부터의 일탈 내지 전환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해투안보 통제 조치의 도입은 트럼프 행정부 이후 중국을 타깃으로 한 핵심 기술과 제품 및 산업 분야에 있어 무역, 투자, 공급망 및 산업역량 분야별로 도입된 일련의 경제·국가 안보 조치에 있어 남아 있는 공백을 메움으로써 미국판 경제안보체제의 마지막 퍼즐을 완결하는 의미를 가진다(<표 1> 참조).

7 2022 NCCDA안은 OITA안을 발의하였던 케이지 상원의원 등이 미국이 해외투자에 대한 안보 통제를 위해 발의한 바로 이전의 법안을 가리킨다.



〈표 1〉 미국의 분야별 경제안보 조치 현황

| 분야 | | 안보조치 법적 근거 |
|--------------------|----------------------------------|-------------------------------------|
| 무역 통제 | 수출 | 상무부 수출관리규정(EAR) Entity List('19.5월) |
| | |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
| | 국방수권법의 일부인 수출통제개혁법(ECRA, '18.8월) | |
| | 수입 | ITC기술·서비스 공급사슬 확보를 위한 EO('19.5월) |
| 투자 통제 ⁸ | 외투(inbound FDI) |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MMA, '18.8월) |
| | | 2022 (개정) 국가핵심역량방위법안 ('22.6월 상원 발의) |
| | 해투(outbound FDI) | 입법 추진 중 (2023 OITA, 2003.8. EO) |
| 공급망 강화 | | 대통령 행정명령 14017호('21.2월) |
| | | 핵심 산업 공급망검토 1차 보고서('21.6월 공표) |
| | | 핵심 산업 공급망검토 2차 보고서('22.3월 공표) |
| 산업역량 지원 | | 2022 반도체법(반도체과학법 A부) |
| | | 2022 인플레이션감축법(IRA) |
| | | 바이오기술·제조혁신 행정명령('22.9월 공표) |

작성: 필자 작성

8 미국 입장에서 자산이 외국으로부터 미국 국내로 들어오는 유입(inflows)을 가리켜 대내투자(inbound investment)라 하며, 이와 반대로 자산이 미국으로 외국으로 나가는 유출(outflows)을 가리켜 대외투자(outbound investment)라 한다. 우리의 경우 관행상 전자를 외국인투자, 후자를 해외투자로 구분하여 부른다.



다. 대응 과제

최근 전개되고 있는 미국 주도의 경제·국가 안보에 기초한 대중 핵심기술 분야 투자에 대한 통제 조치는 법의 지배,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공정 경쟁 등과 같은 미국 가치의 수호를 위한 것으로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그 근원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깊은 불신에 기인한 것이어서, 이러한 미국의 對中 경제안보 통제 기조는 중국 체제가 변화되지 않는 한 쉽게 바뀌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핵심 기술을 둘러싼 미중 간 기술생태계에 있어 분절(decoupling)을

‘뉴노멀’로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EO에 따른 재무부 규칙의 시행과 OITA 안의 발효 시 이에 따른 우려 국가(중국 등)에의 적용 대상 민감기술 분야에의 M&A를 포함한 해외투자에 있어 미국의 해투안보 통제 조치에 저촉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우려 국가에의 해외투자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